

# 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29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봉명·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
폐지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전문위원 장 예 순

# 대전광역시봉명·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봉명·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른 증환지 및 감환지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소멸시효가 2007. 6. 29일자로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봉명·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.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이 지난 2000. 1. 28일 폐지되고 본 조례에 의한 봉명·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소멸시효가 2007. 6.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